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황도수 □정책위원장:박상인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장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 문의 : 정책국(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 02-766-5624 / [ka9202@ccej.or.kr](mailto:ka9202@ccej.or.kr))
- 시행 : 2020.10.20.(총 2매)

##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나EV(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교부는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sup>1)</sup>한 바대로 국교부는 인체에 위해한 예비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조사 결과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

1) “자동차 예비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리콜 판정에도 무상수리 권고한 사례 〉2)

연번	연도	권고일자 (위원회 심의일자)	제조사	차명 (대상대수)	조사내용	조사결과	심평위 결과
1	2015	2015.1.29	현대	트라제XG (145,542대)	차체부식	리콜	무상수리
2	2015	2015.8.27	쌍용	체어맨 (89,656대)	열쇠잠금장치 파손	리콜	무상수리
3	2016	2016.6.16	한국지엠	매그너스 (123,200대)	차체부식 및 균열	리콜	무상수리
4	2017	2017.3.23	현대	아반떼 (214,735대)	코일스프링 파손	리콜	무상수리
5	2017	2017.3.23	현대	스타렉스 (251,783대)	코일스프링 파손	리콜	무상수리
6	2017	2017.3.23	현대	유니버스 (7,303대)	클러치부스터 고정 볼트 손상	리콜	무상수리
7	2017	2017.3.23	현대	싼타페 (62,837대)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리콜	무상수리
8	2017	2017.4.23	현대/기아	쏘울, 포르테 (33,529대)	조향장치 무거워짐	리콜	무상수리

국교부가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일 뿐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는 리콜이라는 형식적 결과를 넘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 그러나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교부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교부는 지금껏 능력 대처와 불투명한 공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능력 대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결합조사의 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이 공개한 “자동차 관련 공개 무상수리 권고 현황” 재가공